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제7조제1항제1호 중 “유지관리” 를 “유지관리 및”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지관리” 를 “유지관리 및” 으로, “역할” 을 “자격, 역할”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유지관리” 를 각각 “유지관리 및” 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로 한다.

-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제8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졸업증명서

별표 1 제3호의 선임자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별표 1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 표에서 “선임자격” 이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가. 제1호 및 제2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 제3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 를 “3일” 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7서식 앞쪽의 현 근무처란 중 “영업소 소재지” 를 “주소” 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2매” 를 “1매” 로 한다.

3. 졸업증명서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을 “공동주택”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주택” 을 “공동주택,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4년 4월 17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기준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용도()
	공동주택	세대수()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용도()
	주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책임 [] 보조	주소		
	등급		
	수첩발급번호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그 밖의 건축물등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4. 첨부서류에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하역사·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을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서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완화하며,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한을 '2022년 4월 17일'에서 지하역사 등은 '023년 4월 17일'로, 공공건축물 등은 '2024년 4월 17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